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 사 결 과 보 고 서**

2025. 0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차 례

1. 심사 의안	1
2. 심사 경과	1
3. 탄핵소추사건 조사활동 경과	2
가. 실시경위 및 회의 경과	2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경과	4
다.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경과	6
4.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주요 질의·발언 및 답변 요지	8
5. 종합의견	25
6. 참고자료	29
[참고자료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29
[참고자료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63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

2025. 05.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 의안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2. 심사 경과

가. 탄핵소추안 발의일자·발의자

- 2025. 03. 21.(김용민의원·정춘생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88인)

나. 탄핵소추안 회부일자: 2025. 04. 04.

다. 탄핵소추안 상정 및 청문회 실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일

-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04. 09.) 상정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04. 16.) 청문회 실시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05. 01.)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3. 탄핵소추사건 조사활동 경과

가. 실시경위 및 회의 경과

- 2025년 3월 21일 김용민의원·정춘생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88인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동 탄핵소추안은 2025년 4월 2일 14시 5분에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같은 해 4월 4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를 건이 가결되어 같은 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됨.
- 2025년 4월 9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2025년 4월 16일 개최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위한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함.
- 2025년 4월 16일 청문회를 열기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관련 참고인 1인에 대한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청문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문회 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5월 1일 동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함.

탄핵소추사건 조사 경과

일 시	의 사 일 정	비 고
<제1차> 2025.04.09.(수) 10:00	6.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7.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9.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장소: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5.04.16.(수) 10:00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본관 319호)
<제4차> 2025.05.01.(목) 20:30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본관 406호)

* 탄핵소추안 심사와 무관한 의사일정은 생략함.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경과

(1) 증인

연번	출석요구일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1	2025. 4. 16.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前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죄 관련 및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출석
2	2025. 4. 16.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내란죄 관련 여부	불출석
3	2025. 4. 1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 12. 3.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출석
4	2025. 4. 1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 12. 3.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출석
5	2025. 4. 16.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4. 12. 3.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F4 회의") 관련	출석
6	2025. 4. 16.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업무지시 폭지 전달 및 이행 여부 관련	출석
7	2025. 4. 1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마은혁 미임명 논의 국무회의 (2025. 3. 4.) 참석 관련	출석
8	2025. 4. 16.	박현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무대행	친윤 경찰 고위직 기습임명으로 경찰장악과 국회봉쇄 / 체포조 지원 가담 의혹	출석
9	2025. 4. 16.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12월 3일 비상계엄 적법성 및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법행위 등	출석
10	2025. 4. 16.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출석

(2) 참고인

연번	출석요구일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1	2025. 4. 16.	이황희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불출석
2	2025. 4. 16.	차성안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불출석
3	2025. 4. 16.	김선택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출석
4	2025. 4. 16.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불출석
5	2025. 4. 16.	임지봉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추가출석 요구 (2025. 4. 16.) 출석

다.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경과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430	422	-	8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비고
1	KT	14	10	0	4	
2	LG유플러스	14	10	0	4	
3	SKT	14	9	0	5	
4	경찰청	10	3	1	6	
5	고용노동부	4	3	0	1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9	1	0	8	
7	교육부	4	4	0	0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5	0	0	
9	국가기록원	2	1	0	1	
10	국가보훈부	4	3	0	1	
11	국무총리비서실	11	8	0	3	
12	국무조정실	7	2	0	5	
13	국민권익위원회	8	3	0	5	
14	국방부	7	5	0	2	
15	국세청	9	0	0	9	
16	국토교통부	8	6	0	2	
17	국회사무처	1	1	0	0	
18	금융감독원	6	3	0	3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비고
19	금융위원회	6	4	0	2	
20	기획재정부	86	51	13	22	
21	농림축산식품부	4	4	0	0	
22	대검찰청	3	0	0	3	
23	대법원(법원행정처)	10	4	0	6	
24	대통령경호처	15	0	0	15	
25	대통령기록관	5	1	0	4	
26	대통령비서실	18	1	2	15	
27	문화체육관광부	4	4	0	0	
28	법무부	28	5	3	20	
29	법제처	23	16	0	7	
30	보건복지부	4	3	0	1	
31	산업통상자원부	4	3	0	1	
32	여성가족부	4	3	0	1	
33	인사혁신처	2	1	0	1	
34	외교부	7	3	3	1	
3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7	5	0	2	
36	중소벤처기업부	4	3	0	1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0	0	3	
38	통일부	4	3	0	1	
39	한국은행	10	4	3	3	
40	헌법재판소	2	1	0	1	
41	해양수산부	4	4	0	4	
42	행정안전부	19	7	3	9	
43	환경부	4	4	0	0	
44	법무법인 동인	1	0	0	1	
45	서울지방변호사회	1	2	1	8	
46	세무법인 금강	11	2	1	8	주식회사 옥연 관련
합 계		430	215	30	199	

4.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주요 질의·발언 및 답변 요지

(1) 2024. 12. 3. 비상계엄 관련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지? ○ 내란에 관여하여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현재에서 ‘내란’과 관련한 판단이 있었는지? ○ 내란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에 대해서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함. ○ 계엄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전에 인지하고 돕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쪽지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그에 대한 이행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만 가지고 묵인 방조가 되겠는지? ○ 증인은 12·3 비상계엄을 반대하였다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하였나? ○ 12·3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이를 말리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한 바 있나?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아직까지	○ (최상목 증인) 반대하였음. ○ (최상목 증인) 계엄 당시에도 반대했고, 당시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 자리에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도 해당 내용을 무시하기로 했음. F4 회의 또한 당시 시장안정을 위한 것이었음. ○ (김석우 증인) 없었음. ○ (김석우 증인) 사전에 알았다면 몰라도, 현장에서 받고 내용 숙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 (최상목 증인)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음. ○ (최상목 증인)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음. ○ (최상목 증인) 당시 계엄을 반대했고, 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이에 대한 사과가 없음. 최상목 증인은 사과한 적 있는지? ○ 윤석열 대통령을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는지, 존경하고 있는지? ○ 최상목 증인의 답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과 유사하게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릴 뿐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음. ○ 내란 관련 입장이나 답변의 변화가 있는지? ○ F4 회의 당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총재께서 만류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최상목 증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나? ○ 12. 4. 주식시장을 열지 말지 논의한 것은 계엄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닌지? 계엄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계엄을 옹호하는 것임. ○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을 불러 계엄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맞나? 문건의 내용을 보지 못한 것이 맞나? ○ 쪽지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른 답변에서는 ‘예비비’ 부분을 봤다고 답변함. ○ 윤인대 증인은 어떠한지? ○ 비상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의 모습을 봤다면, 최상목 증인도 윤인대 증인과 같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음. ○ (최상목 증인) 대학 다닐 때는 잘 모르고 있었음. ○ (최상목 증인) 답변과 입장의 변화 없음. ○ (이창용 증인) 사의를 말씀하셨으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만류하였음. ○ (이창용, 최상목 증인) 계엄을 전제로 주식시장에 관해 논의한 바 없음.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논의하는 것임. ○ (최상목 증인) 실무자가 쪽지 형태로 접혀 있는 종이를 주었음. 접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보지 못했음. ○ (최상목 증인) 그 자리에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이후 01:50경 봤다는 것임. ○ (윤인대 증인) 회의 준비 때문에 잠시 밖에 나왔다가 쪽지를 보고 확인했음. ○ (최상목 증인) 당시 상황이 초현실적이었고, 문건 내용을 몰랐음. 문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정상 아닌지? ○ 계엄선포 당일, 쪽지 관련, 명확한 인식을 못하고 바지 주머니에 구긴 상태로 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실 무자 윤인대 차관보에 전달하였던 것 맞나? ○ 그날 국회에서는 예산안 증액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기재부 2차관이 갑자기 예비비 복원 이야기를 꺼냈음. 이는 당시 문건의 계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의미임. ○ 증인은 쪽지 내용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비상계엄 이후 F4회의에서 쪽지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적 있나? ○ 쪽지 관련 국회 및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나? 진술에 변동 없는지? ○ 본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맞는지? ○ A4용지 한 페이지 크기의 종이를 쪽지라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건의 내용은 사실상	없어서 차관보에게 맡겨둔 것임. ○ (최상목 증인) 정확히는 쪽지를 접힌 상태에서 받았음. ○ (최상목 증인) 그것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봄. ○ (최상목 증인) 전혀 없음. ○ (이복현, 김병환 증인) 없음. ○ (윤인대 증인) 없음. ○ (이창용 증인) 없었음. 주식시장을 12. 4.에 열 것인지, 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윤인대 증인)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진술에 변동 없음. 만약 이를 지시로 느꼈다면 지시 이행은 거부하였을 것임. ○ (윤인대 증인) 저는 국내정책 담당이기 때문에 쪽지 내용과 관련한 것은 예산 쪽에서 처리하여야 함. 제 업무와 관련 없음. ○ (최상목 증인) 받았을 때는 그 정도 크기의 종이인지 몰라서 쪽지로 인식하였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내란임. A4용지를 쪽지로 보는 것이 맞나? 이는 지시 문건임. 그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하고 고발하였어야 했음.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이미 같은 사유에 대한 판단이 있었음. 다만, 쪽지 하나만 다른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해외 주요국의 회담 상대방 등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된 현 상황에서, 부총리로서 국민들 앞에서 죄송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인사의 휴대전화 기기가 잇따라 교체된 바 있는데, 증거인멸이 아닌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유심칩을 바꾼적 있나? ○ 휴대전화 증인이 계엄 직후인 2024. 12. 7.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 있는데, 해당 답변과 증인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에 대해 해명이 필요함. ○ 증인의 발언은 국회법상 위증에 해당함. ○ 휴대전화 교체 질문의 핵심내용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 (최상목 증인) 회담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최상목 증인) 없음. ○ (최상목 증인)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며, 휴대전화 기기 고장으로 교체한 것이며, 바꾼 기기들은 현재도 보유하고 있음. ○ (최상목 증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 (최상목 증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교체하였는지 묻는 것임. 증거인멸의도 없이 고장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발언의 취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관례상으로도 기억에 반하지 않고, 같은 기일 내에서 본인의 발언을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12. 7. 바꾼 사실이 증명되자 입장을 바꿈. 휴대전화를 왜 바꿨는지? 법무부 차관 최근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있는지?	○ (최상목 증인) 먹통이 되어 바꿨음, 화면이 고장난 것임. 고장난 이유를 알 수 없음. ○ (김석우 증인) 최근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은 없음.

(2)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은 인사권자로서 고민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지? ○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	○ (최상목 증인) 직무정지 중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여·야 합의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임 대행에게 전달받았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인을 임명한 것이고, 다른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것임. ○ (최상목 증인) 임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28일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노력한 것이 아님. ○ 김석우 증인에게도 당시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건의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이러한 미임명 장기화에 김석우 증인도 동조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기관을 형해화하는 행위인데, 왜 임명을 안 한 것인지? ○ 그렇다면 언제 임명하려고 한 것인가? 국무회의의 반대가 있다고 현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마은혁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시 정식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태로 한 것은 국무회의라는 정식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 ○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추천에도 도장을 찍어 정부로 보냈음에도 미임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임. ○ 헌법재판소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 기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 기속은 남을 엮매어 강제로 자유를 빼앗는다는 의미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미임명한 행위로 탄핵	○ (김석우 증인) 당시 간담회 때, 권한 대행에게 임명거부가 가능한 실질적 권한이 있느냐에 대하여 형식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야 합의도 확립된 관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음. ○ (최상목 증인) 두 명은 임명했음. 나머지 한 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작동되도록 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임. ○ (최상목 증인) 반대라기보다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음. ○ (최상목 증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음. ○ (최상목 증인)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덕수 권한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소추되었고, 최상목 장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근거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였음. 이는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행위와 모순됨. ○ 권한대행의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학계의 반대 학설이 있는지? 반대 학설도 있는데 한쪽 입장을 고수하는 참고인들만 출석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임. ○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에 대한 법무부 차관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 법률가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생각은? ○ 이는 정무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님. 권한쟁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는지? ○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작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부터 권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의견을 유지한 것일 뿐임. ○ (김석우 증인) 학계에서 국민투표 발의, 헌법개정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공통된 견해이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최상목 증인) 국무위원들은 임명시기를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하였고 각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김석우 증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음. ○ (이복현 증인)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나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작동할 수 있는 숨통을 틔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헌법재판소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된 것이라 생각함. 마은혁 미임명은 당시의 정무적 결단에 가깝다고 생각함. ○ (이복현 증인) 결정을 존중하나 임명시기와 관련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20일 미임명이 적당한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 (김선택 참고인)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선별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한대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 탄핵사유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정되기까지 63일간 임명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두 번째 탄핵사유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던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5일 동안 임명하지 않던 행위임.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마은혁 재판관의 추천사유서에는 교섭단체 중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재판관 등의 미임명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나? ○ 참고인은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이 이에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인지?	법상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선언했음에도 이후 25, 6일간 위헌상태를 방치한 것이 명백함. ○ (김선택 참고인)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위법 이외에 중대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결정에서 언급되었던 국민의 신임 배반 여부와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2월 27일 이후 미임명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 관점이 아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 시 인용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음. ○ (임지봉 참고인)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현재 판단이 있었고, 헌재법에도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그 위헌상태를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모두 기각 결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 최상목 탄핵 소추사유는 한덕수 사유에 비해 범위가 적음. 물론 법리적 사유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탄핵사유가 현존한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결론이 나온 사항임. ○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통설은 어떻게 되는지? ○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던 당시 11월 26일 제청하여 국회에서 12월 27일 동의하였는데, 바로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헌법 위반 아닌지? ○ 마용주 대법관의 미임명은 아무런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률에 ‘지체 없이’라는 내용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임. 그럼에도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함. ○ (이석우 증인) 양쪽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음. 헌법재판소 미임명 부분은 헌재결정을 따를 것인지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결정과 다를 수 있고, 특별검사 추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는 실질적인 기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임지봉 참고인) 권한대행은 대행자일뿐이므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불가하고,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경우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음. ○ (김선택 참고인) 바로 임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임명하지 않던 것은 위헌임.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이유도, 논리도 없이 그냥 뭉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기타 사항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최상목 증인은 내란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도 하지 않음. 특검 임명은 거부권 행사사항도 아니고 강행규정임에도 88일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공수처 검사를 미임명 중인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부적절한 행위임. ○ 경제 장관으로 경제 살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정국 혼란 상태를 방치·방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인지? 환율 상승을 바라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인지? ○ 미국채 매입 및 매도 시점은?	○ (최상목 증인) 민간인 때부터 오래 갖고 있던 예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임. ○ (최상목 증인)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지고 있던 채권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바로 매각하였고, 12월 중에 팔아서 12.31.자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나타나지 않음. 외화예금을 2018년 민간인 신분 때부터 갖고 있었고, 이후 금융기관 담당자가 외화예금을 외화채권으로 바꾸는 것을 2024년 8월쯤 저에게 추천하였으나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미국채 매입은 나라의 위기상황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닌지? ○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고 있던 미국채를 판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부총리가 될 사람이 미국채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함. ○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채를 구입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음. 환율 안정·방어 및 한국 보유 미국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본인이 이를 구매한 것에 대해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은지? ○ 미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경제수장으로서 이해충돌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 채권은 경제위기일 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미국 및 한국에서도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비슷했음. 국가 위기 속에서 경제수장이 이득을 위해 미국채를 구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심할 만한 사항인데 의견은? ○ 계엄 이후 국가재정은 11.4조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1.4조 가량의 주식이 증발하였음. 증인들은 달러 자산 15	- 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전환하였음. 이는 환율변동과는 관계가 없음. ○ (최상목 증인) 사인인 시절부터 보유 중이던 외화를 미국채로 변환한 것일 뿐이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 ○ (최상목 증인) 공직의 무게감을 깊이 느낌. 국민을 속이려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음. 금융기관의 추천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결과에 책임감을 느낌. ○ (최상목 증인) 공직자로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이창용 증인) 부적절한 행위로 봄. ○ (이복현, 이창용 증인) 없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만불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한 적 있는지? ○ 미국채 투자 관련 사과하면 될 문제를 변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문재인정부 2021, 2022년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이후 세수가 부족해졌음. 경제를 망가트린 사유로 탄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질의에, 자영업자들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관세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이고 산업계에서는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F4)을 출석 요구하여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것은 민생을 신경 쓴 행보가 아님.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경우 경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지? ○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 (최상목 증인) IMF 근무로 받은 달러를 보유하였던 것이며, 2018년부터 보유하였던 외화예금으로 미국채를 구입하였던 것임. ○ (최상목 증인) 당시의 경제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판단함. ○ (최상목 증인) 자영업자에게 돈을 나눠주기보다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 (김병환 증인) 경제위기 상황이고 탄핵으로 위기 상황이 가중될 수 있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상목 증인) 미국 재무장관이 통상 관련 회의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다음주에 회의 예정임.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보다 이번 정부의 경제팀이 물가안정 등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일본과 달리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서두르고 있음. ○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중인지? ○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경제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재벌들에게 뇌물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 10년 전 미르재단 사건 관련과 관련하여 당시 최상목 증인의 참고인 조사가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한 번으로 종결된 게 맞는지? ○ 대통령경호처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를 때 이를 왜 말리지 않았나? ○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2025. 1. 3. 내란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수사 외압임. ○ 대통령실 및 경호처 압수수색 등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도 공수처에서 수사중인 것 알고 있는지, 협조의무가 있던 것이 아닌지? ○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뭉 헌법	○ (최상목 증인) 그렇지 않음.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음. ○ (이복현 증인) 그러함.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한 균형있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최상목 증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노력과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하고 구조적 문제인 경우 그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임. ○ (최상목 증인) 정상회담 준비 차원이었으며, 당시 미르재단 부분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 ○ (최상목 증인) 무죄로 불기소된 사항임. ○ (최상목 증인) 무력충돌을 우려하였음. 양 측에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하였음. ○ (최상목 증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질의가 와서 확인차 전화한 것임. ○ (최상목 증인)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존중한 것임. ○ (김선택 참고인) 대통령의 탄핵으로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재판관 2명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자동차 및 조선소 방문, 본회의장 불참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행보로, 이른바 대권 놀이를 시작한 것이 아닌지? ○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표명으로 모호하게 바꾸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완규 증인은 지명받은 것이 맞는지? ○ 정부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있는데, 탄핵소추 남용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임. 헌법재판소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국회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지는 않음. 방통위의 경우 4명을 연달아 탄핵하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와 적합하지 않은 검찰청법 위반 사유가 포함되고, 법무부	인한 직무 정지 시의 권한대행과, 탄핵 인용으로 인한 궐위 상태 권한대행의 성격은 조금 다름. 사고 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중요하나, 대통령 파면 이후 궐위 시 과도적인 관리정부가 됨.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됨. 따라서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음. ○ (최상목 증인)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 ○ (이완규 증인) 후보자가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음. ○ (김석우 증인) 내각불신임제도가 없는 우리의 헌법 구조를 감안하여 탄핵소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장관 탄핵사유에는 야당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실이 들어가는 등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음. 한편 탄핵소추대리인단과 관련하여 국민 혈세로 4억 6천만원이 지급되었음.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면 천만원 씩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야당은 국무위원의 1/3을 고발하는 등 정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 국무위원, 특히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나 형사고발 조치가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신년사에서, 정치적 갈등 속 국정공백 지속은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에 대한 시각? ○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최고의 처벌므로 지속적인 남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직권남용죄가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것인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과거 증인의 발언 내용	○ (이창용 증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침. ○ (이창용 증인)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 경우 해외에서 어떻게 볼 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였음. ○ (이완규 증인) 국회의 권한으로 현직 공무원이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임지봉 참고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청문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음.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을 보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음. 헌법 제 84조의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보아야 한다, 제84조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특권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나? ○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의 대선 승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뉴스 보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최상목 장관 탄핵이 의결되면 사퇴할 것인지, 곧 사퇴한다고 한 것 맞는지? ○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당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였는데, 박현수가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인물임을 알고 있는지? ○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들이 모두 유죄 받은 것 알고 있는지, 김건희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삼부토건도 조사 중인데 김건희, 이종호 수사 중인지?	○(최상목 증인)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됨. ○(김선타택 참고인) 대통령 궐위 이후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정부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핵심임. 추후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발언 등을 행해서는 안됨. ○(최상목 증인)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달 정도 남은 것으로 자동 퇴직할 것이라 생각함. ○(최상목 증인) 박현수는 2006년경부터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적 친분이 있지는 않으며, 경찰청장 및 행안부 장관 대행의 추천으로 임명한 것일 뿐임. ○(이복현 증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것은 알고 있으나 김건희 사건은 검찰의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삼부토건 사건은 철저히 수사중임.

질의 및 발언 요지	답 변 요 지
○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사건 보고 받았는지?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관여한 바 있는지?	○ (박현수 증인) 국정상황실에 근무했으나 마약수사 사건을 보고 받은 바 없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음.

5. 종합의견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①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 ②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참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탄핵소추 대상자(이하 “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였음.

그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음.

□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안)

- 일부 위원의 경우 대상자는 2024. 12. 3.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이를 묵인·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예비비 등 관련 문건을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겨둔 것만으로는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 또한, 대상자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당시 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라는 점 및 국회의 후보자 선출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미 의뢰 및 내란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 탄핵절차나 내란죄 수사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법행위로 볼 근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이러한 사 안이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 그 밖에 미국 국채 매입은 대상자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활용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공직윤리나 이해충돌 등과 무 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대상자는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 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다수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12. 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에도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입 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문건을 받고 이를 기획재정부 차관 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한 행위, F4 회의를 소집·긴급대책회의 를 진행한 행위 등 대상자가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점,

- 특히, 대상자는 대통령·국무총리의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어,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인만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장기간 보류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기속력 있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위헌·위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및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
- 또한, 대상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임명에 동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임명을 보류하였고, 국회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 한편,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의결·이송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하여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 등과 더불어 12. 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절차 및 내란죄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헌법수호 등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위법행위라는 점,

- 그 밖에도 대상자는 경제부총리이자 외환당국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참고자료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9248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의자 : 김용민 · 정춘생 · 윤종오
용혜인 · 한창민 의원
등 188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최 상 목

직위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인하여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헌법 제71조). 피소추자는 경제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

고(헌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권한·위법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권한·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나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

혁 재판관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 2. 27.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소추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다.

피소추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하고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다.

이에 피소추자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소추 대상 사실 및 위헌·위법성

1. 피소추자의 12·3 내란 관련 행위

가. 사실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말부터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에서 시국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가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모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1:55경 피소추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들을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호출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2024. 12. 3. 22:23경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40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네받았다. 그 문건에는 ‘예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입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이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이에 피소추자는 2024. 12. 3. 23:40경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직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로 이동 중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가 있는 후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국회 외곽을 봉쇄해 출입을 통제했고 계엄군은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나가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진입을 막고 있는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한편 계엄군은 국회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장악한 후 위헌·위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2024. 12. 27.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뒤에는 2025. 2. 2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으며 2024. 12. 31. 과 2025. 1. 31. 두차례에 걸쳐 12·3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안’이라고 함)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내란공범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2024. 12. 10.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라고 함)에 따라 피소추자에게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자 추천의뢰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태이다.

나. 헌법과 법률 위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일 것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선포 당시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한덕수 총리와 피소추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문서에 부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아¹⁾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비상계엄선포행위는 위헌·위법한 것이며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에서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하급

1) 2024. 12. 11. 한덕수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도 부서의 그 절차를 거쳤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안 거쳤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2024. 12. 13.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에게 하달하는 등 내란의 암묵적 실행을 지시하였으며, 2024. 12. 27. 권한대행이 된 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에 대한 두차례의 거부권행사,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후보자 추천 부작위 등을 통하여 내란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헌법 제8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2.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가. 사실관계

(1) 국회 선출 후 미임명

헌법재판소는 2024. 8. 13. 국회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

관(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이 2024. 10. 17.자로 임기만료 예정임을 통
보하고, 국회의장은 2024. 8. 16. 각 교섭단체에게 통보 공문을 송부하
였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4. 8.경부터 수
차례의 교섭과 협의 끝에 2024. 11. 29. 의석수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더
불어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을,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2024. 12. 9. 국회의장에게 각 송부하였다. 이후 국회법
제46조의3과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
12. 23.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에 대하여, 2024. 12. 24. 재판관
후보자 조한창에 대하여 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2024. 12. 24. 3
인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
추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국회의장은 2024. 12. 26.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
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
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
표로 각 가결되었다. 이에 국회는 같은 날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을
수신자로 하여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음을 통
지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 제65조 제3항과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후 국회는 2024. 12. 27.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 등을 들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피소추자가 2024. 12. 27.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5. 1. 1.자로 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으나, 마은혁에 대해서만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27. 권한대행직을 맡은 날부터 2025. 2. 26.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62일째 임명하지 않았다.

(2) 헌법재판소 선고 후 미임명

국회는 2025. 1. 3. 피소추자가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

한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 및 피소추자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가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하였다(2025헌라1).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국가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나 피소추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 결정일 이후 헌재에 이르기까지 23일째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12. 31.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2025. 2. 3. 정기 브리핑에서 피소추자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

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는 2025. 2. 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지지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2. 27.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 라고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25. 3. 4. 제3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이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였다. 또한 2025. 3. 12.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다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라. 이건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현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소추자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건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 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께 공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피소추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 일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대한민국 최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 고 헌법기관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는 결국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것이고 이는 곧 헌법 자체 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적 헌법의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을 종합 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 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

자가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는 ‘국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재판관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대표의원은 재판관 선출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2024. 11. 18. 후임 재판관 후보자들을 2024. 11. 22.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각 교섭단체 사이에서 협의되었던 내용에 의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을,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각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각 송부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사청문위에 회부하였으며, 각 교섭단체로부터 인사청문위 위원을 추천받아서 선임함으로써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마은혁에 대해서 여야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는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피소추자를 상대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피소추자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67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새로운 별도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발생한 작위의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3.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가. 사실관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 11. 26.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지명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12. 후임 대법관으로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국회에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 12. 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은 2024. 12. 27.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직무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반대함에 따라 2024. 12. 23.부터 2024. 12. 24.까지 실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2024. 12. 26.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4. 12. 23.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되었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으로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아가 2024. 12. 27.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법률이 정한 다음 순서로 피소추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헌법 제104조에 의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2. 27.부터 현재까지 85일째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1. 31.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 공식 상태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

리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임명을 촉구하였다. 실제로 대법원에 적체되고 있는 사건도 600~700건에 이르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도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3. 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소추자에게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라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를 종합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하였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하였으며,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은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재량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국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여야합의 없이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일부 기능은 정지되었다.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가. 사실관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

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함)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는 지난 2024. 12. 10. 본회의를 열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의원 중에는 여당 의원 22명도 포함되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 12. 11. 상설특검법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석열에게 상설특검법 제3조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 사실과 명단을 송부하였다. 그리고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추천위원회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하였음을 밝혔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위 명단을 송부받고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하던 중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한편, 2024. 12. 16.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

하였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하던 중 2024. 12. 27.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헌법 제65조 제3항과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소추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후 2024. 12. 30.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5. 1. 2.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소추자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25. 1. 7. 대한변호사협회는 피소추자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 3. 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소추자를 향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라며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촉구하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피소추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24. 12. 27. 권한대행을 맡은 날부터 현재까지 85일째 위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소추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부작위에 대해 2025. 1. 9.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했으며 현재 심리 중에 있고(2025헌라3),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 1. 7. 피소추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나. 헌법 또는 법률위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이며, 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으로써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이에 기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회는 지난 2024. 12. 10.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 12. 11. 상설특검법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설특검법 제3조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 사실과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 날부터 대통령에게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피소추자는 이와 같은 부작위 행위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묵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행위는 피소추자가 권한대행이 된 날로부터 발생한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써 명백한 위법이다.

피소추자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절실히 필요한 때에 추천위원회에 특검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은 물론 내란 범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헌법 파괴 세력인 내란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특검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위와 같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 한편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소추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며 또한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는 자이다. 이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으로 인한 국가 갈등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통한 국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들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함은 물론 내란 수사에 대해 방해를 하고 있다.

피소추자가 윤석열의 12.3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윤석열에게 건네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문건을 하급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해산하여 장기 독재·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우리 헌법이 지켜왔던 삼권분립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므로 중대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더욱 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5. 2. 27.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피소추자의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다.

또한 피소추자는 대법원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대법원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사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행정부 우위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호견제 작용을 염두에 둔 삼권분립 원칙의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피소추자는 지난 2024. 12. 10.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관련하여 특검후보자 추천의뢰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피소추자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12.3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 및 방해하기 위함이다. 신속한 내란 진압을 통해 국가 안정을 꾀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도피 및 증거인멸을 도우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소추인의 이러한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더 이상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II. 결론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국헌문란 행위를 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할 헌법상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 헌법상 이러한 책임은 국회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헌정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곧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였고,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회 운영비 차단 및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내란 자금에 관한 대통령 지시 문건으로 하여금 재정적 조치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소추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고의로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불이행함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고 있다. 이는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통해 부여한 국민의 신임
을 배반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
반을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김용민 정춘생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등 188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24. 12. 11.자 제419회(임시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2. 세계일보, 2024. 12. 12. 자 <‘5분 회의’에 부서(副署)도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3. 한겨레, 2024. 12. 12.자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위원에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4. 2024. 12. 13.자 제419회(임시회) 제3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5. 경향신문, 2024. 12. 16.자 <우원식,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 내란 특검법·국조도 초읽기>
6. 뉴스타파, 2024. 12. 23.자 <‘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없었다… 의안 보고·심의·부서 全無>
7. 경향신문, 2024. 12. 25.자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8. SBS NEWS, 2024. 12. 26.자 <야당,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여당>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2. 26.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10. 노컷뉴스, 2024. 12. 31.자 <현재 “‘6인 체제’ 부담은 사실…재판관 3명 임명 절실”>
11. 뉴스1, 2025. 01. 02.자 <민주 “최상목 대행, 즉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해야">

12. 헤럴드경제, 2025. 01. 04.자 <尹 “국회 자금 차단 후 비상 입법기구 창설”…최상목에 문건 지시>
13. 뉴스핌, 2025. 01. 07.자 <변협 “내란 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4. 경향신문, 2025. 01. 08.자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5. 이데일리, 2025. 01. 09.자 <상설특검 출범 속도날까…우의장,崔대행 상대 ‘권한쟁의’>
16. MBC 뉴스, 2025. 01. 23.자 <현재 ‘최상목 문건’ 진술 확보…“윤지시로 알아”>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01. 26.자 피고인 윤석열 공소장
18. 대법원, 2025. 01. 31.자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보도자료
19. 연합뉴스, 2025. 02. 03.자 <현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안 따르면 헌법 위반”>
20. 2025. 02. 06.자 제422회 제7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1. 헌법재판소, 2025. 02. 27.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문>
22. 조세일보, 2025. 02. 27.자 <우원식 “최상목,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

명 요청...’9인 체제’ 복원해야”>

23. 강원도민일보, 2025. 02. 27.자 <[속보] 최상목 대행,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위헌에도 “정무적 판단 필요”>

24. 중앙일보, 2025. 03. 06.자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25. 한겨레, 2025. 03. 07.자 <마은혁 임명 또 미루는 최상목...“국무위

원 다수 동의”>

26. 국민일보, 2025. 03. 12.자 <우원식 “崔, 나쁜 선례 만들어... 마은

혁 즉각 임명하라”>

27. MBC 뉴스, 2025. 03. 18.자 <최상목 “헌재 탄핵심판 어떤 결정도

존중·수용해 달라”>

28. MBC 뉴스, 2025. 03. 19.자 <최상목에 건넨 ‘비상입법기구’ 문

건...’전두환 독재’ 꿈꿨나>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2025. 0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1. 조사 목적

소추대상자인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음. 소추대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절체적·실체적 요건을 위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였고, 비상계엄 관련 직무지시 내용이 포함된 쪽지를 대통령에게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하급자에게 전달하여 직무를 지시하였음.

또한,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25. 2. 27.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 취지에 맞는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으며, 국회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였음에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음.

이에 2025. 3. 21. 김용민의원·정춘생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88인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이에 따라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헌법질서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하여 소추대상자의 직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회법」 제131조제2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2. 조사 범위

- 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항
- 나. 기타 탄핵소추과정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

3. 조사 방법

- 가.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
- 나.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실시함.
 - 청문회는 2025. 04. 16.(수) 10:00에 개최함.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TV 및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 다. 서류제출 요구 대상기관, 출석요구 대상 증인·참고인 등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4. 소요경비

증인 여비 등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5. 기타

- 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신문 순서 및 위원별 신문 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나.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위원, 사무보조자 등 관계자는 「국회법」 제 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라.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